대법원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김선수)는, 국회의원인 피고인 1 등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(지시) 및 기부행위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, 원심판결(피고인 1: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)을 확정함(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3도16114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가. 피고인 1의 지위 등

피고인 1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으로서, 2020.
3. 9.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('이 사건 선거')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인 이재명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음

나. 공소사실의 요지 및 소송경과

순번	공소사실	원심 (= 제1심)	피고인
1	22. 3. 8. 80만 황○○ 통해 박○○에 제공 지시	유	1, 2
2의나	22. 3. 9. 130만 피고인 2의 금품제공 지시 (김○○에게 박○○에 전달 지시)	<mark>유</mark> 죄	2 및 황○○, 김○○
2의다	22. 3. 9. 130만 황○○, 김○○의 박○○에 대한 금품 제공	유죄	
3의가	22. 3. 8.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기부행위 및 이익제공 권유	유죄	2 내지 4
3의나	22. 3. 8. 334만	유죄	

	피고인 3, 4의 기부행위 및 이익 제공	(3,440,000원) 이유무죄	
	120 3, 121 71 811 7 31 1 1 1 1 1 1	(114,000원)	
4의가 1)	22. 2. 20. 이○○에 대한 20만 제공	무죄	
4의가 2)	22. 3. 8. 김□□, 이○○, 임○○에 대한 각 30만 제공	유죄 무죄 (임○○ 부분)	1
4의나	22. 4. 12. 467,000원 대한국가수협회 식사대금 기부행위	유죄	
5	22. 3. 8. 100만 이ㅇㅇ	유죄	2

■ 제1심 :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
● 피고인 1: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

● 피고인 2: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

● 피고인 3: 벌금 400만 원

● 피고인 4: 벌금 200만 원

■ 원심

- 항소기각
- 피고인들 및 검사가 상고함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■ 피고인 1 등이 각 금품제공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, 공직선거 법 제135조 제1항 위헌 여부 등

나. 판결 결과

■ 검사와 피고인들 **상고 모두 기각**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

■ 검사 상고 관련

 일부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■ 피고인들 상고 관련

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, 선거운동 관련 금 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,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, 죄수관계,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, 위헌인 법률조항 을 적용한 잘못이 없음